의안번호	제 104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6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44

제출연월일 : 2022년 6월 3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2022. 8. 11. 시행 예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,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”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·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 신설(안 제7조)

-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 항목 규정

○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0조)

- 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 항목에 명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지사는 법 제4조”를 “도지사는 제4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.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2. 관서운영 기본경비
3.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

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도체육회장”을 “충청북도체육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: 충청북도체육회장,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,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

제2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운영비 지원 관련 부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보조금 지원) 지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보조금 지원) ① 도지사는 제4조----------.
<신 설>	② 도지사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. 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.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 2. 관서운영 기본경비 3.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<신 설>	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<신 설>	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10조(구성) ① 협의회는 도지사, 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0조(구성) ① ----------충청북도체육회장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-----.
1. 당연직 : 도 체육업무담당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국장, 충청북도체육회(이하 “도체육회”라 한다) 사무처장,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도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사무처장	1. 당연직 : 충청북도체육회장,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,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관련 규정의 적용)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②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	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길러 건강한 삶을 영위

○ 2022. 8. 11. 시행 예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조항을 신설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7조(보조금 지원) ②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.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2. 관서운영 기본경비
3.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발생 예상, 추계는 2022~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

○ 인　　원 : 도체육회(24명), 도장애인체육회(13명)

○ 지급단가 :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, 기타 업무추진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

나. 추계 결과

○ 산출과정 :

<도체육회 운영비> ′22년(1,977,600천원)

- 인력운영비 : 68,220천원 × 24명 = 1,637,280천원
- 경상운영비 : 14,180천원 × 24명 = 340,320천원

<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> ′22년(1,022,100천원)

- 인력운영비 : 64,470천원 × 13명 = 838,100천원
- 경상운영비 : 14,150천원 × 13명 = 184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세부내역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총 계	**15,925,700**	**2,999,700**	**3,090,000**	**3,182,000**	**3,278,000**	**3,376,000**
도 체육회 지원	10,499,600	1,977,600	2,037,000	2,098,000	2,161,000	2,226,000
도장애인체육회 지원	5,426,100	1,022,100	1,053,000	1,084,000	1,117,000	1,150,000

※ ′22년 운영비 대비 연 3% 증가분 반영(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적용)

6. 작성자 :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장형석